

의안번호	2212646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9.25.
추계번호	25D47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4억 6,400만원씩 총 12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안 제85조의3)	면접인원	49,282	49,282	49,282	49,282	49,282	—	—
	면접수당	0.05	0.05	0.05	0.05	0.05	—	—
	추가재정소요	2,464	2,464	2,464	2,464	2,464	12,320	2,464

주: 본 추계는 인사혁신처 발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5조의3(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채용 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5조의3(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 신규채용의 면접시험 응시자 인원에 면접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공무원 신규채용의 면접시험 응시자 인원은 인사혁신처 발간 연도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른 신규임용(공채, 경력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그밖의 시험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채 신규채용 인원(평균): 24,790명(123,952명/5년)
 - 경력채용 신규채용 인원(평균): 8,064명(40,321명/5년)

[표 2] 국가공무원 신규임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소계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2020	신규임용	8,792	158	7,156	3,656	132	13,220	125	33,239
	공채	3,308	82	5,913	2,570		13,151		25,024
	경력채용	5,484	76	1,243	1,086	132	69	125	8,215
2021	신규임용	13,043	135	5,430	4,739	124	14,040	231	37,742
	공채	7,756	85	4,368	3,067		13,980		29,256
	경력채용	5,287	50	1,062	1,672	124	60	231	8,486
2022	신규임용	11,320	172	7,701	4,679	92	13,653	167	37,784
	공채	5,605	93	5,979	2,817		13,590		28,084
	경력채용	5,715	79	1,722	1,862	92	63	167	9,700
2023	신규임용	10,459	133	5,151	2,981	105	11,123	74	30,026
	공채	5,434	68	4,228	1,681		11,102		22,513
	경력채용	5,025	65	923	1,300	105	21	74	7,513
2024	신규임용	9,627	114	2,454	1,945	146	11,111	85	25,482
	공채	4,849	71	1,976	1,090		11,089		19,075
	경력채용	4,778	43	478	855	146	22	85	6,407
소계	신규임용	53,241	712	27,892	18,000	599	63,147	682	164,273
	공채	26,952	399	22,464	11,225		62,912		123,952
	경력채용	26,289	313	5,428	6,775	599	235	682	40,321

자료: 인사혁신처 발간 「인사혁신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면접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2항¹⁾.

1)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

제25조제2항²⁾과 제30조제1항제1호³⁾를 고려하여, 연도별 면접대상은 채용인원의 1.5배수와 같다고 가정함

○ 면접시험 응시 인원: 49,282명(공채 37,186명+경력채용 12,096명)

- 본 추계에서 면접수당 단가는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면접 1회당 50,000원)을 참고하여, 면접시험 1회당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면접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응시 인원(49,282명)에 면접수당 단가(50,000원)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4억 6,400만원씩 총 12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수당 지급 (안 제85조의3)	면접인원	49,282	49,282	49,282	49,282	49,282	-	-
	면접수당	0.05	0.05	0.05	0.05	0.05	-	-
	추가재정소요	2,464	2,464	2,464	2,464	2,464	12,320	2,464

주: 본 추계는 인사혁신처 발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서 생략>
- 2)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서 생략>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인사혁신처 발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른 신규임용 인원과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제외되어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